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3143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10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5.5.20., 공포 및 시행) 사항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 신규직위(3급) 신설과, 이를 반영한 하부조직 개편(’25.7.4.)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정국장 산하 하부조직 명칭 ‘담당관’, ‘실’ → ‘과’로 일괄 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 신규 직위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입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담당관실에”를 “운영지원과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공무국외출장”을 “의정국장, 공무국외출장”으로, “실·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을 “그 외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

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현장민원담당관”을 “현장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담당관으”를 “의사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으”를 “재정분석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제담당관이”를 “법제과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제담당관과”를 “법제과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담당관은”을 “법제과는”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언론홍보실장”을 “언론홍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담당관”을 “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2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청인 및 의장·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u>의정담당관실에</u> ,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하고, 해당 비치 부서의 장(각 위원회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인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 ----- ----- ----- ----- <u>운영지원과에</u> ----- ----- ----- -----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3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8조(회의) ①·② (생략)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u>의정담당관</u> 이 된다. ④ (생략)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운영지원과장</u>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4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u>의정담당관</u> 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 ----- --- <u>운영지원과장</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5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4명으로 한다.	③ ----- ----- -----.
1. <u>공무국외출장</u> 허가부서의 장 및 <u>실·담당관, 수석전문위원</u>	1. <u>의정국장, 공무국외출장</u> ----- <u>그 외 부서의 장</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6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11조(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시민권익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현장민원담당관</u> 이 된다.	제11조(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현장민원과장</u> -----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7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재정분석담당관</u> 이 된다.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재정분석과장</u>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제8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 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 무처 <u>의사담당관</u> 으로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생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의사과</u> -----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 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 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서 울특별시의회사무처 <u>재정분석담 당관</u> 으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관 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 ----- ----- ----- <u>재정분석과</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9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회 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u>법제담당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 ----- <u>법제과장</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생략)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u>법제담당관</u> 이 수행한다.	② ----- <u>법제과</u> 가 -----.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제담당관</u> 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u>법제과</u> 와 ----- ----- -----.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u>법제담당관</u>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 ----- ----- <u>법제과</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u>법제담당관</u> 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② ----- <u>법제과</u> 는 -----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10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법제담당관</u> 이 된다.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법제과장</u>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11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u>언론홍보실장</u> 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③·④ (생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언론홍보과장</u> ----- -----.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제12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5조(자료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각 <u>실·담당관</u> 및 전 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각종 자 료가 발간된 경우 7일 이내에 해 당 간행물을 3부 이상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① ----- ----- <u>과</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